

특약 개정 대비표

- 1. 약관명: 『주거래하나 통장』 특약
- 2. 변경 시행일 : 2025년 7월 1일
- 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- 4. 주요 변경 내용 : 급여인정 기준 확대

<신구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	개정 후		비고
제1조~제5조 <생 략>		제1조~제5조 <좌 동>		급여 인정 기준 확대
제6조 수수료우대서비스		제6조 수수료우대서비스		
① <생 략>		① <좌 동>		
1.~ 2. <생 략>		1.~ 2.<좌 동>		
(주1) 주거래이실적 : <생 략>		(주1) 주거래이실적 : <좌 동>		
이체실적 항목	실적 인정기준	이체실적 항목	실적 인정기준	사명 변경
급여 입금	<u>타인으로부터 건별 50만원 이상 급여 적요 포함 입금 또는 급여 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 (급여 적요: 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SALARY, BONUS 등)</u>	급여 입금	<u>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 된 적요*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(ex. *급여, 월급, 봉급, 연봉, 상여, 성과, 보너스 , SALARY, PAY 등/ 등 특직장명)</u> <u>② 회사에 의한 ‘급여코드’로 입 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 인 경우</u> <u>③ 손님이 ‘급여일’을 지정(등록) 하고,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 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</u> <u>※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(카드대 금, 보험료 등)거래, 자동화기기 입금분,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 요는 제외</u> <u>※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 후 입금 건부터 적용</u>	
연금 입금	4대 ~<생 략>~, <u>KEB하나은행</u> 에 서 가입한 개인연금(주택연금, 연 금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) 기타 연금(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 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‘연금’ 또는 ‘보험사명’이 기재된 연금)	연금 입금	4대 ~<생 략>~, <u>하나은행</u> 에서 가입한 개인연금(주택연금, 연금 신탁, 연금보험, 연금펀드) 기타 연금(고객 지정 연금수급일 전후 1영업일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 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‘연금’ 또는 ‘보험사명’이 기재된 연금)	
카드 가맹점대 금 입금	<생 략>	카드 가맹점대금 입금	<좌 동>	

아파트관리비 출금	<생 략>	아파트관리비 출 금	<좌 동>	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명 통칭
카드 결제대금 출금	<생 략>	카드 결제대금 출금	<좌 동>	
주택청약종합저 축 납입	하나은행의 본인명의 주택청약종 합저축에 납입(청년우대형 포함)	주택청약종합저 축 납입	하나은행의 본인명의 주택청약종 합저축에 납입 <삭 제>	
공과금 출금 (2건 이상)	<생 략>	공과금 출금 (2건 이상)	<좌 동>	
3. <생 략> (수수료우대 I) ~(수수료우대 II) <생 략> ②~③ <생 략>		3. <좌 동> (수수료우대 I) ~(수수료우대 II) <좌 동> ②~③ <좌 동>		
제7조 <생 략> 부칙 <생 략> <신 설>		제7조 <좌 동> 부칙 <좌 동> 2.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5년 07월 01일부터 개정 시행 합니다.		
				부칙 추가

